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강북 제1선거구 이종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의 “수탁자”라는 용어는 개인 자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제1항에 따라 “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‘수탁자’라 한다)”으로 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갖추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) 시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, 사회복지시설은 최초 위탁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민간위탁 남용 방지와 효율성·공정성을 위한 장치로,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